

2025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3696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5	2,665,024	2,665,024	5,925,827	2,888,634	175,857	2,861,336	48.7
2024	3,958,021	3,958,021	6,134,670	4,791,931	-	1,342,739	78.1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	35,775	96.3

-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6,502만원이었으나 실제 59억 2,58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8억 8,863만원을 수납하고, 1억 7,586만원은 정리보류하여 28억 6,134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따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48.7%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0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7,921,238	100,946	-	1건	1건	-	8,022,184	7,079,762	209,819	521,552 (6.5%)
2024	7,316,665	-	-	-	-	-	7,316,665	6,592,968	100,946	622,751 (8.5%)
2023	2,156,531	-	-	-	-	-	2,156,531	2,037,750		118,781 (5.5%)

- 세출 예산현액은 80억 2,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88.2%인 70억 7,9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억 2,155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사용은 1건에 5억원으로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억원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의 이체 없음.
-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 사용은 1건에 400만원으로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400만원임.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 95만원으로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억 95만원임.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3건에 2억 981만원으로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1억원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9,381만원
 - 품질시험장비 구입 1,600만원임.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억 2,155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비고
2025	8,022,184	521,552	6.5%	
2024	7,316,665	622,751	8.5%	
2023	2,156,531	118,781	5.5%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42백만원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7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사업 24백만원
 - 기본경비 11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39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1백만원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1백만원
 -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27백만원
- (건설혁신담당관) 집행잔액 : 2백만원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2백만원
- (건설혁신담당관) 낙찰차액 : 5백만원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2백만원

-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8백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2백만원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백만원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5백만원
 -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20백만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집행잔액 : 2억 72백만원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억 3백만원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35백만원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억 32백만원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70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30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2백만원
 - 기본 경비 18백만원
- (품질시험소) 낙찰차액 : 63백만원
 - 품질시험장비구입 54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9백만원

4. 검 토 의 견

가. 일반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5	2,665,024	2,665,024	5,925,827	2,888,634	175,857	2,861,336	48.7
2024	3,958,021	3,958,021	6,134,670	4,791,931	-	1,342,739	78.1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	35,775	96.3

가) 개 요

-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6,502만원이었으나 실제 59억 2,583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8억 8,863만원을 수납하고, 1억 76백만원은 정리보류하여 28억 6,134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따른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48.7%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11~14)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59억 2,583만원은 예산현액 26억 6,502만원의 222%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기술심사담당관					
기타수수료	10,400	7,200	7,200	△3,200	○ 건설기술심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로 정확한 개최회수 예측이 불가하여 추정치로 예산액 산정
그외수입	-	390	390	390	○ 복리후생비('24년 12월 중복지급) 반납분 발생
과징금	-	20,000	-	20,000	○ 예측 불가한 세입으로 예산 미편성 (최근 3개년 부과 건수 1건)
기타과태료	82,045	127,114	109,529	45,069	○ 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과태료 대상 통보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 산정이 어려움
지난년도수입	22,132	25,530	4,732	3,398	○ 과태료 체납에 따라 미수납액 발생 하여 추정치로 예산액 산정
건설혁신담당관					
증지수입	6,390	6,030	6,030	△360	○ 건설업 등록 감소로 과소수납됨
과징금	322,919	2,324,027	707,147	384,228	○ 최근 5개년 부과 및 징수율을 반영 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추정 치보다 과다 수납됨
기타과태료	271,742	373,104	305,167	33,425	○ 최근 5개년 부과 및 징수율을 반영 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추정 치보다 과다 수납됨
지난년도수입	124,512	1,358,458	64,465	△60,047	○ 최근 3개년 평균징수율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과소수납됨
지역건축안전센터					
기타이자수입	1,758	26,840	26,840	25,082	○ 집행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적시 반 환 지체에 따른 이자액 발생
시·도비보조 금등반환수입	32,082	98,150	98,150	66,068	○ 집행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적시 반 환 지체에 따라 정확한 예산액 산 정이 어려움
그외수입	-	4,078	4,078	4,078	○ 급여(퇴직자) 반납분 발생
품질시험소					
공유재산 임대료	770	753	753	△17	○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 감소
주차요금수입	12,168	11,428	11,428	△740	○ 시험소 방문 민원인 또는 직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으로 이용자 수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자차 이용자 소폭 감소)
증지수입	774,849	487,365	487,365	△287,484	○ 최근 3개년 평균치 반영하여 예산액 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가 속화로 품질시험 의뢰건수 감소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기타수수료	3,096	3,279	3,279	183	○ 예년 대비 수수료 높은 대형계량기 의뢰건수 소폭 증가
기타이자수입	359	562	562	203	○ 기관명의 통장 발생이자 세입조치
위약금	-	4,808	4,808	4,808	○ 납품지연 계약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세입처리
그외수입	-	50,488	50,488	50,488	○ 과지급 수당 반납분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과징금’은 위반행위 발생 및 행정처분 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부과하는 비정기적 세외수입으로서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2천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미제출, 허위 작성 또는 주요부실 내용 은폐 후 제출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기는 하나,
- 해당 업체가 '25.10.13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 제4항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 마.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6.4.18일 서울시가 동 소송에서 패소²⁾한 데 이어 처분 의뢰기관(대구광역시)도 항소를 포기([표] 참조)함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최종 미수납 처리된 것으로,

[표] 기술심사담당관 '과징금' 추진 경위

□ 추진 경위

- '25.6.12 : 건설엔지니어링 행정처분 의뢰 (대구광역시→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25.9.17. : 청문회 실시(서울시)
- '25.9.26. : 청문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과징금) 알림
- '25.10.13. :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과징금부과 집행정지 소송
- '26.4.18. :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과징금부과 집행정지 소송 패소
 - ※ 대구광역시에서 항소포기 결정('26. 4. 7. 메일 수신)
- 향후 계획 : 소송 패소에 따라 과징금 부과 취소 예정)

- 비정기적 세외수입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력과 소송비용(약 77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만큼,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세입 산정 시에는 처분 사유의 법적 타당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타과태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행

2) 서울행정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57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한○○○○○○○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6.
- 판 결 선 고 : 2026. 3. 27.

주 문

1. 피고가 202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소 취하나 항소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 되면 그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³⁾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8,205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억 27백만원으로 4,507만원(54.9%)이 증가하였는데([표] 참조),

[표]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b)-(a)
2025년	82,045	127,114	109,529	45,069
2024년	81,479	98,005	90,727	16,526
2023년	39,990	95,524	79,256	55,534
2022년	38,613	46,925	36,856	9,969

- 이는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22~'24년 평균, 49건)과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22~'24년 평균, 350건)의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을 추계([표] 참조)하였으나, 실제 징수는 협회로부터 위반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예측치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 외부 기관의 통보에 의존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향후 세입 추계 시에는 협회와의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 및 최근의 위반 행위 증감 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표] 기술심사담당관 ‘기타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82,045천원
 - 산출내역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 49건×366,000원=17,934,000원
 ⇒ '25년 예상 부과건수 : 49건('22~'24년 부과건수 평균)
 ⇒ '25년 예상 평균부과금액 : 366,000원
 ▸ '22.~'24.4월 건당 평균 부과금액 = 40,295천원/110건 = 366천원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 350건×215,500원×85%=64,111,250원
 ⇒ '25년 예상 부과건수 : 350건('22. 8월~'24. 4월까지 월평균 29건)
 ⇒ 평균 부과금액 : 215,500원('22. 8월~'24.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징수율 : 85%('22. 8월~'24. 4월까지의 징수율으로 산정)

○ 다음으로, 건설혁신담당관의 세입 항목 중 ‘과징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4)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부과⁵⁾하는 과징금으로, 예산액 3억 22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3억 24백만원으로 20억 2백만원 (621.7%)이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 당해 연도 과징금 부과 실적은 총 113건으로 전년도 27건에 비해 86건 증가하였으며, 부과액도 전년에 비해 19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징액 기준 예>				<정률 기준 예>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도급금액에 따른 과징금의 비율(%)				
	과징금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경력증 등 대	4,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무 등록 자 하 도 급	24	18	12	8
부 당 특 약 강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직접시공의 무 위 반	24	18	12	6

5)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억 16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표] 참조).

[표] 최근 4년간 건설혁신담당관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과징금	
	건수	금액
합 계	210	4,450,758
2025	113	2,324,027
2024	27	408,063
2023	33	436,746
2022	37	1,281,922

- 이는 동 세입의 경우 법 위반 적발 및 영업정지에 따라 부과되는 특성상,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의 평균 부과액 4억 12백만원에 평균 징수율 78.3%를 반영하여 세입을 추계([표] 참조)하였으나,

[표] 건설기술정책관 ‘과징금’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

- 2025년 추계액 : 322,919천원

- 산출내역

- '24년 전망 포함한 최근 5개년('20년~'24년 최대·최소 제외) 평균 부과액에 평균 징수율 반영하여 추계

322,919천원 = 412,412천원(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부과액)

× 78.3%(최대·최소 제외 5년 평균 징수율)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년 평균(최대, 최소 제외)
					4월기준	전망	
부 과 액(천원)	129,534	354,652	1,281,922	436,746	78,695	445,837	412,412
징 수 액(천원)	129,534	314,651	967,610	295,699	31,647	316,223	308,858
징수율(%)	100	88.7	75.4	67.7	40.2	70.9	78.3
부과액증감률(%)	94.9	173.7	261.4	-65.9	-	2.08	90.2

- 당해 연도 내 실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당초 예측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세입 추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큰 격차가 발

생하였으며,

- 이처럼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시장 상황 및 행정처분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커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되나,
-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 간의 지나친 괴리는 건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통보 추이 및 강화된 단속 기준 등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지난년도수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⁶⁾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같은 법 제99조 및 100조⁷⁾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예산액 1억 24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3억 58백만원으로 12억 34백만원(995.2%)이 증가하였음.

- 동 세입은 '24년도 징수전망액 11억 82백만원에 최근 3년간('22년~'24년) 평균 증가율(25.4%)과 징수율(8.4%)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표]참조), 실제 징수결정액은 최근 5년간 발생

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한 미수납액의 누적분이 합산됨에 따라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큰 차이가 발생([표]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건설혁신담당관 ‘지난연도수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5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24,512천원						
- 산출내역						
○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24년 징수전망액에 최근 3개년('22년~'24년) 평균 증가율 및 징수율 반영						
$124,512\text{천원} = \{1,182,043\text{천원} + (1,182,043\text{천원} \times 25.4\%)\} \times 8.4\%$						
※ 연도별 지난연도 건설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2~'24년 예상 평균
				4월기준	전망	
부 과 액	599,453	778,741	935,871	1,182,043	1,182,043	965,552
징 수 액	65,368	73,746	47,510	23,237	99,292	71,939
징수율(%)	10.9	9.4	5.0	1.9	8.4	8.4
부과액증감률(%)	21.3	29.9	20.2	-	26.3	25.4

[표] 건설혁신담당관 ‘지난연도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b)-(a)
2025년	124,515	1,358,458	64,465	1,233,946
2024년	93,870	1,214,806	31,439	1,120,936
2023년	55,555	935,871	47,510	880,316
2022년	41,568	793,406	88,411	751,838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체납자의 납부 회피와 재산압류 절차상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밝히고 있으나, 낮은 수납률에 따른 체납액 누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음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입 항목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서울시가 자치구로 교부한 시비보조금에 대해 자치구가 사업을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환수하는 수입으로, 예산액 3,20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9,815만원으로 6,607만원(205.9%) 증가하였음.

- 이는 '25년 세입추계 당시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188만원과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3,020만원의 환수 예상액만을 반영하였으나([표]참조),

[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5년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지원’ 환수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1,882천원
- 산출내역 : 3개년 평균반환율 5.73%를 24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계
 ➔ 32,850천원(‘24년 예산)×5.73%(평균반환율)=1,88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편성액	교부액	교부집행액	교부집행잔액	반환율
22년	49,665	49,665	47,315	2,349	4.7%
23년	43,015	42,385	40,746	1,638	3.8%
24년	55,086	54,478	49,735	4,743	8.7%

◆ 2025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환수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5년 추계액 : 30,200천원
- 산출내역
 - 집행잔액 반환의 예측이 어려워, 24년예산액의 3개년(22년~24년) 평균반환율 15.1%를 곱하여 추계함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편성액	교부액	교부집행잔액	반환율
22년	400,000	398,619	25,660	6.4%
23년	200,000	73,573	21,463	29.1%
24년	200,000	144,958	14,315	9.8%

- 당초 세입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3,145만원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사업 6,509만원이 추가로 징수결정 되는 등 자치구 반납액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표] 참조).

[표]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사업별 수납액 현황

(’25.12월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부 과		수납액	
	건수	징수결정액	건수	금액
계	33	98,150	33	98,150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2023~2024)	4	1,212	4	1,212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2023~2024)	17	31,448	17	31,448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2023~2024)	10	65,092	10	65,09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2024)	2	398	2	398

-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각 자치구별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 정산 시기가 상이하여 정확한 세입 산정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 사업의 반환 예상액이 세입 추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세입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환수입이 세입 추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증지수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⁸⁾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⁹⁾ 등에 근거한 건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이며, 예산액 7억 75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억 87백만원으로 2억 87백만원(37.0%) 감소하였음.

- 이는 건설공사 품질점검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1.4%('24년:1,814건→'25년:1,245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자재 공급량 축소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 '24.7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¹⁰⁾에 따라 품질점검 의뢰 방식이 기존 방문 접수 방식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찰방식으로 전환([표] 참조)되면서,
-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바, 품질시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9)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4.1.9일 개정(시행 '24.7.10.)]

② ~ ⑤ (생략)

[표] 품질시험소 건설공사 품질점검 의뢰 방식 변경 현황

구 분	변경 전(~'24. 7. 9.)	변경 후('24. 7. 10.~)
접수시스템	품질시험 관리시스템 (시험소 자체 운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국토안전관리원)
시험접수 절차	의뢰자가 시험소를 방문하여 시험의뢰서 및 시료 제출,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의뢰자) 시험의뢰서 입찰공고 등록 (대행기관) 입찰 참여 (의뢰자) 대행기관 선정 시료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대행기관) 시험 접수
성적서 발급	“서울시 온라인민원 홈페이지” 접속, 의뢰자 인증 후 열람/출력	의뢰자가 CSI 접속 후 열람/출력
공통사항	- 시료 제출 : 기관방문, 택배 -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금회 5,049만원 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실시한 주요수당 자체점검(3월~5월) 결과 품질시험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¹¹⁾에 근거하여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금(5배)을

11)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수결정¹²⁾한 것으로,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복무관리 체계 재점검 및 청렴 교육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다) 미수납액(결산서 p.60~61)

- 건설기술정책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 13억 43백만원 대비 15억 19백만원 증가한 28억 61백만원으로, 이는 지난연도수입 및 과징금 등 체납액이 당해연도 징수되지 못하고 누적됨에 따른 것이며,
-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총 609건 중 ‘지난연도수입’이 426건에 11억 39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69건에 16억 37백만원, ‘기타과태료’는 114건에 8,552만원 순으로 나타났음([표] 참조).

[표] 건설기술정책관 ‘미수납액’ 징수 현황

(’26.5월 기준, 단위 : 천원)

세 목	부 과		미수납액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25.12.31일)		'26.5월 기준 미수납액 현황	
	건수	징수결정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01	4,228,233	609	2,861,336	681	3,501,244
지난연도수입	564	1,383,988	426	1,138,934	589	2,825,027
과징금	114	2,344,027	69	1,636,880	18	615,830
기타과태료	923	500,218	114	85,523	74	60,387

12) 2025년 3월~5월 서울시 품질시험소 주요수당 자체 점검 결과 적발현황

부정 수령액	그 외 수입	납부여부	비 고
10,097천원	50,488천원	완납	21명

- 미수납액의 경우, 서울시의 가용 자원 위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2조¹³⁾ 등에 따른 5년의 지방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징수권이 소멸되어 대규모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재정 누수가 우려는 바,
- 서울시는 채무자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강도 높은 처분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13)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1,677,573	-	-	-	-	-	1,677,573	1,402,271	193,819	81,483 (4.8%)
2024	1,046,663	-	-	-	3,949	-	1,046,663	1,008,797	-	37,866 (3.6%)
2023	870,261	-	-	-	-	-	870,261	824,343	-	45,918 (5.3%)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16억 7,757만원으로 이 중 83.6%인 14억 227만원을 지출하고 1억 9,3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인 8,148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0~23)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억 7,757만원 대비 4.8%인 8,148만원으로 작년 대비 1.2%p 증가(3.6%→4.8%)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04,095	6,716	1.3

2	건설기술 정보제공 및 직무교육	38,895	8	0.0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22,415	-	-
4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사업	90,000	24,516	27.2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4,515	1,091	2.0
6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000	-	-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8,900	11,262	5.7
8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80,100	26,616	7.0
9	기본경비	188,653	11,273	6.0
	합 계	1,677,573	81,483	4.9

- 먼저,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설계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9,000만원 중 6,548만원을 지출하고 27.2%인 2,45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25	90,000	72,560(80.6%)	65,484	90.2%	8개 기관, 18개 부서
2024	90,000	88,964(98.9%)	84,398	94.9%	6개 기관 6개 부서
2023	90,000	90,000(100.0%)	84,866	94.3%	9개 기관 9개 부서

- 동 사업은 8개 기관 18개 부서의 공무원 자체 수행을 통해 외주용역 대체에 따른 7억 28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표] 참조)를 나타냈고,

- 실무 담당 공무원의 기술 축적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되는바, 향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요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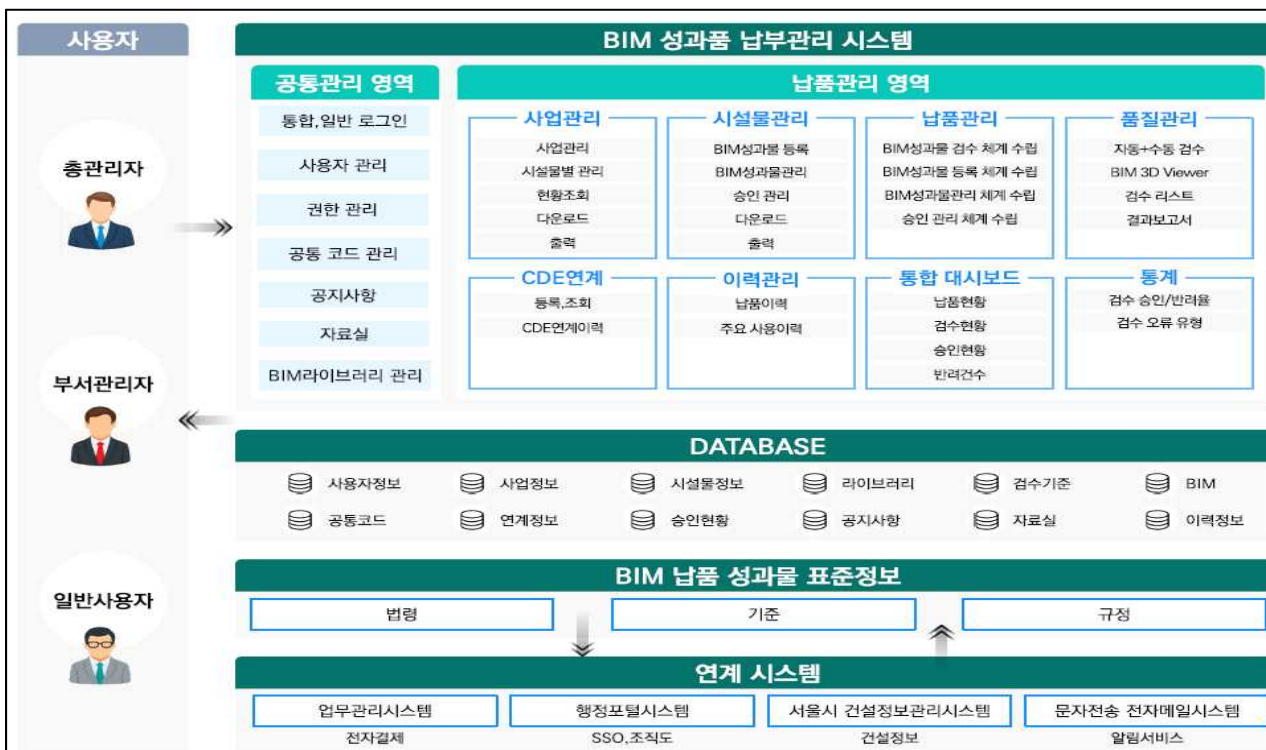
연번	기관(부서)	사 업 명	배정 금액	집행 금액	외주용역 예상금액	절감액
	계		72,560	65,484	792,993	727,509
1	공 원 조 성 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7,524	7,298	7,524	226
2	서 울 시 립 대 학 교	교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13,250	12,553	61,967	49,414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5,268	5,100	6,653	1,553
4	노 원 구	2025년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외 1건	6,162	6,063	23,285	17,222
5	송 파 구	송파대로(문정2동) 피녹지 정비공 사 외 2건	7,636	7,636	76,520	68,884
6	양 천 구	2025년 안양천로 보행환경 정비 공사 외 1건	7,420	7,049	99,792	92,743
7	서 대 문 구	2025년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 성사업(북한산 이음길 식재공사)	5,300	1,505	4,158	2,653
8	중 랑 구	중화2동주민센터 주변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 외 6건	20,000	18,280	513,094	494,814

-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사업은 스마트 건설의 핵심기술인 BIM¹⁴⁾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산 현액 3억 8천만원 중 3억 53백만원을 지출하고 7.0%인 2,66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14)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 동 집행잔액은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사업 추진 상의 특이 사항이나 절차적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¹⁵⁾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의무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인 '26.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27년 이후 'BIM 설계데이터 통합 관리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건설산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요구됨.

[표] BIM 시스템 구성도



15)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20.12.)

제2장 BIM 적용절차 및 기준 중 2.3. 성과품 관리

(1)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개요

- 설계 및 시공단계 종료 후 최종 발주처에 납품된 BIM 성과품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BIM 데이터를 추출 및 가공하여 BIM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2)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 및 운영

- 각 발주처는 납품된 BIM 성과품 일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며, 자체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 마련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인력(조직)을 확보하여 조기에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다) 예산이용·전영·이체·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결산서 p.71)

-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으로, 연구용역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한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1억원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9,38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2건			398,900	193,819	11,262	48.6%	
1	기술심사 담당관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00,000	100,000	-	50%	준공기한 미도래
2	기술심사 담당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 선 및 활용방안 마련	198,900	93,819	11,262	47.2%	준공기한 미도래

-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시 공공 인프라 및 민간 건설사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을 정립하

고자 '25.1월부터 '26.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
억원 중 50%인 1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25년도 1차분 용역의 경우 당초 '25.12월까지로 계획하
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실 등 서울시 관련부서 협
의('25.5월 ~ '26.2월) 및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관련 기본법 제정
검토('26.2월) 등의 절차 이행에 추가 기간이 소요([표] 참조)되
어 1차분 준공기한이 '26.2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것으로,

[표]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

협의 기관(부서)	협의 일자	주요 협의 내용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활용부서)	2025. 5. 22.	마스터플랜 수립목적·인프라 범위 설정, 「기반시설관리법」상 기반시설관리계획과의 차별성 및 본 과제 수행 필요성 재 검토·논리 보완 요청
서울시 관련부서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등)	2025. 5.~ 2026.2 (수시)	부서별 기반시설 관리현황·자료 협의, 통합관리 범위 및 부 서 간 역할 조정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 럼	2025. 7. 15.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과 서울시 인프 라 마스터플랜 도입 방향
영국 ARUP·COWI·GLA	2025. 11. 5.~ 11. 12.	런던 인프라 2050 계획 수립방식, 사후평가(Post Evaluation) 체계, 펀딩갭·재원조달, 거버넌스, 디지털 기 반 인프라관리 벤치마킹
교통분야 자문 (서울연구원·바우컨설턴트)	2025. 11.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및 현황 검토
ARUP Korea	2025. 11. 28.	인프라 마스터플랜 시범모델 선정을 위한 런던 사례 검토, ARUP·런던과의 향후 협력 방안
서울시 (중간보고)	2025. 12. 18.	1차년도 중간성과 점검 — 도입 필요성, 정의·주요 내용, 연구목표·성과활용 방안, 국내외 법·제도 및 현황 분석, 인 프라 현황·시민체감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 소(공동·위탁 연구기관)	2026. 1. 21.	핵심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도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협의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 럼	2026. 2. 9.	국토 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과 서울시 2040 인프라 마 스터플랜의 상관관계 검토

- 다년도로 추진되는 용역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사업은 서울시 대형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이행 부진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법령 준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99백만원 중 47.2%인 9,38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¹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¹⁷⁾에 따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후 사후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발주부서의 법령 이해 부족 및 예산 미편성 등으로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24.11월 기준 28건)¹⁸⁾하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사고이월 발생 사유는, 서울시가 '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서 상 준공 예정일을 '25.12월로 제시¹⁹⁾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6)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⑥ (생략)

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건설공사 사후평가 이행 협조 요청 및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4664, 2024.11.12.)
3.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미이행 현황을 송부해 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2024.11.15.(금)까지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산안 의결 이후 수립한 사업계획에서는 실제 준공기한을 '26.5.31일로 설정²⁰⁾하여 추진함에 따라 연도 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이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당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음에도 예산안 의결 이후 차년도 준공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퇴색시킨 부적절한 예산 운용 사례인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19) 2025년도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건설기술정책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용역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12개월)

○ 용역내용 :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 용역비 : 198백만원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 시행 계획’ 기술심사담당관-6558(2025.3.27.)

□ 일정

○ '25. 4.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25. 4.~'26. 5. : 용역 시행

■ 건설혁신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311,000	-	-	-	-	-	311,000	304,609	-	6,390 (2.0%)
2024	648,151	-	-	-	-	-	648,151	259,584	-	388,567 (60.0%)
2023	508,223	-	-	-	-	-	508,223	471,439	-	36,784 (7.2%)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3억 1,100만원으로 이 중 98%인 3억 460만원을 지출하고 2%인 63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4~p.25)

- 건설혁신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1,100만원 대비 2%인 639만원으로 작년 대비 58%p 감소(60%→2%)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2,928	4,010	6.4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4,000	-	-
3	공정건설문화 정착	22,000	-	-
4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0,380	2,380	1.7

5	기본경비	61,692	-	-
	합 계	311,000	6,390	2.1

-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립하려는 사업으로,
 - 예산현액 6,293만원 중 5,892만원을 지출하고 6.4%인 40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비의 집행잔액에 해당함.
 -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는 현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용역(227만원), 외부전문가 수당(82만원), 협의회 운영비 일부 및 하도급 콘텐츠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 32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보상비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8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예산 집행잔액 항목별 상세사유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
계	62,928	58,917	4,011	
사무관리비	42,128	38,917	3,211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 집행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기타보상비	800	800	800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어 불용
포상금	10,000	10,000	0	

다) 예산이용·전영·이체·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없음.

■ 지역건축안전센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4,392,555	100,946	-	1건	1건	-	4,493,501	3,982,159	211,051	-	300,291 (6.6%)
2024	4,116,265	-	-	-	-	-	4,116,265	3,906,571	-	100,946	108,748 (2.6%)
2023	2,238,432	3,317,868	-	-	-	-	5,556,300	2,210,097	2,017,419	-	1,328,784 (23.9%)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43억 9,256만원으로 이 중 88.6%인 39억 8,216만원을 지출하고 2억 1,105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6.6%인 3억 2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6~29)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3억 9,256만원 대비 6.6%인 3억 29만원으로 작년 대비 4%p 증가(2.6%→6.6%)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	114,680	2,416	2.1
2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12,250	103,274	8.5
3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800,000	382	0.0

4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278	1,603	7.2
5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78,109	4,677	2.6
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62,000	95	0.2
7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10,000	-	-
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49,078	34,965	14.0
9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00,946	946	0.9
10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862,610	132,432	15.4
11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50,000	19,500	3.0
12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199,839	-	-
13	기본경비	31,711	-	-
	합 계	4,493,501	300,290	6.7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민간 화재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 및 방화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 63백만원 중 5억 39백만원을 집행하고 37.5%인 1억 3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내용

□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27조(보강), 제28조(시행), 제29조의2(지원), 제52조(벌칙)
* 기존 건축물 대상 소급 적용 ('25. 12. 31.까지 벌칙 적용 유예) → 의무보강 미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2조 벌칙)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 지원한도 : 총공사비 40백만원의 2/3이내(최대 26백만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1 : 1 : 1
○ 사업기간 : 2019 ~ 2025년 종료 (당초 ~'22년 → 연장 ~'25년) ※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시행('23. 4. 18.)됨에 따라 사업추진 근거 마련 및 '25. 12. 31.까지 연장 지원
○ 사업대상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한함

- 동 사업은 서울시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교부된 국비²¹⁾에 시비를 매칭하여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서울시는 당해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40개 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국비 5억 33백만원과 시비 3억 30백만원을 더한 총 8억 63백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실제 집행 실적은 26개 동([표] 참조)에 불과하여, 집행잔액 중 국비 1억 92백만원은 반납하고 시비 1억 32백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임.

[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동 수(건)	계(건)	국 비(백만원)	시비(백만원)
총예산(A)	40	863	533	330
교부완료(B)	26	538	341	197
잔액(A-B)	14	325	192(반납금)	133

-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사업 수행 여건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 수요 조사에 의존하여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향후 반복적인 미집행 및 국비 반납 사례가 발생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예산 교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종료(‘25.12.31.) 대해 화재

21) ‘2025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661(2025.01.14.)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²²⁾를 추진하는 등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결산서 p.33~p.35)

- 예산의 전용은 총 1개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원을 같은 세부사업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음.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	지역건축 안전센터	총 1건		500,000	500,000	500,000	2025-3-14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통계목 변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	-	500,000		

- 이는 '25년 예산편성 당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예산 통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통계목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²³⁾됨에 따라,

22) ‘화재안전 강화 관련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건의’ 지역건축안전센터-5817(2026.4.24.)

수신 :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설안전 정책을 적극 노력하시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한 강남구 아파트 화재('26.2.24., 대치은마) 및 중구 숙박시설 화재('26.3.14., 소공동 캡슐형호텔)와 관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은 화재 초기대응이 어려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검토한 서울시가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해당²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예산의 변경은 총 1개 사업으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표] 예산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	지역건축 안전센터	총 1건		237,250	4,000	4,000	2025-11-20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잔여예산 부족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자 대상 교육 추진 의 어려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89,250	4,000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8,000	-	4,000		

23)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24.11.28.) 24p

(7)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동 사업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회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달된 공문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명시하고 있으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도 “민간의 자본 형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24)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40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 는 보조금

- 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의 활동기간이 ’25.10월부로 종료 되고 ‘제6기 해체공사감리자’를 신규 모집함에 따라,
 - ’25.11월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재비 및 현수막 제작비 등 400만원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 감리자 기수 전환에 따른 신규교육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례적 절차라는 점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 관련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1,540,110	-	-	-	-	-	1,540,110	1,390,722	16,000	133,388 (8.6%)
2024	1,505,586	-	-	-	-	-	1,505,586	1,418,017	-	87,569 (5.8%)
2023	1,286,270	-	-	-	-	-	1,286,270	1,213,407	-	72,863 (5.7%)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15억 4,011만원으로 이 중 90.3%인 13억 9,072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6%인 1억 3,33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30~32)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억 4,011만원 대비 8.6%인 1억 3,339만원으로 작년 대비 2.8%p 증가(5.8%→8.6%)하였음.

[표]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270,691	29,286	10.8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562,570	54,082	9.6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303,509	31,362	10.3
4	기본경비	403,340	18,657	4.6
	합 계	1,540,110	133,387	8.7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은 정확한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71백만원 중 2억 41백만원을 사용하고 10.8%인 2,929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불용액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1,717만원과 공공운영비 994만원 등에 해당하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²⁵⁾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 업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CSI)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축소되어 유지관리비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변경된 여건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건설자재 품질시험’ 세부사업 세목별 집행잔액 사유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합 계	270,691	241,405	29,286	
사무관리비	131,121	113,954	17,167	- 외부위원 수당 및 시험장비 교정 수수료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60,538	50,602	9,936	- 시험 및 검정장비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7,999	1	- 집행잔액
특정업무경비	25,200	24,051	1,149	- 집행잔액
시험연구비	45,832	44,799	1,033	- 집행잔액

25)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4.1.9일 개정(시행 ’24.7.10.)]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사고이월(결산서 p.69~p.72)

-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외자물품 구매 관련 선적 지연으로 ‘품질시험장비 구입’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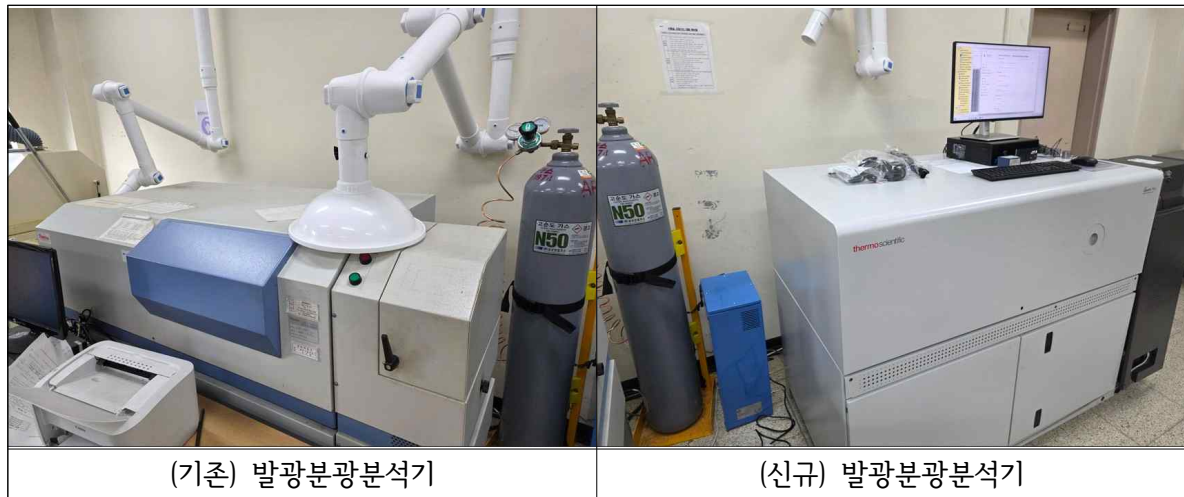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건			562,570	16,000	54,082	2.8%	
1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품질시험장비 구입	562,570	16,000	54,082	2.8%	외자물품(발광분광분석기) 제작완료 후 연말 선적물량 폭증에 따른 선적지연으로 사고이월

- ‘품질시험장비 구입’은 품질시험소의 노후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63백만원 중 2.8%인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고이월은 노후 발광분광분석기²⁶⁾의 교체([그림] 참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국내 제작 장비가 없어 외자구매²⁷⁾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말 물동량 증가로 선적이 지연되어 연내 지급하지 못한 통관비 및 운송료 1,600 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그림] 발광분석기 교체 현황

- 이후, '26.1.30일 자로 지급 완료되어 현재 장비 반입 및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

26) 발광분광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OES) :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 형강 등 철강재의 화학 성분(탄소, 규소, 망간 등) 분석을 통해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철강재 시험 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화학 분석 장비임.

27)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입찰유의서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1. "외자"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장이 국제 상관례 등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